연차휴가사용촉진제 시행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여부

1. 서설

회계연도(예: 매년 1.1.~12.31)기준으로 근로자들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예: 매년 7.1~ 이후)를 시행하는 회사의 경우, 연차사용촉진기간 중 근로자가 퇴사하여 연차사용촉진대상 휴가(연차사용계획서 제출휴가 또는 지정통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생략〉
⑥ 〈생략〉
⑦ 제1항 ·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3. 관련 행정해석 : 근로개선정책과-2379, 2012.4.25.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은 근로자가 전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 발생하며,

-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는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05. 5. 27., 2003다48549, 48556 판결 참조)

근로자들이 2012.1.31.에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시기(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도래와 상관없이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연차사용촉진기간 중 퇴사자에 대한 미사용연차휴가 보상의무(※이하 내용은 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해 실시하는 연차사용촉진제를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정리함.)

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제7항에서는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고 규정하면서 사용자의 보상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규정상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의 의미는 중도에 퇴직하지 않고 1년간(예: 1.1.~12.31) 전제로 12월31일 현재(까지)기준으로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으나 미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보상의무가 면제된다는 의미로 사료됩니다.

2) 따라서 연차사용촉진기간 중 퇴사자의 경우 잔여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끝.

제368호

2020.10.26.

노무법인 두레